## 4. 법률 및 제도

## 가.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 관한 법률

국내에서는 국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기본법령 내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정하였다.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에서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정하였다(국토기본법 시행령, 2017).

하위 법령으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(이후 국토계획법이라 명명함)에서 다시 세부사항을 제정하였다.

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 절차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.

또한, 자연환경보전법 제51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 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.